



### 제3절

## 소방시설법의 연혁 및 국가의 책무 등

### 1 소방시설법의 연혁

#### (1) 소방법의 제정 및 분법

- ① 종전의 소방법 : 1958년에 제정 되어 2004년 5월까지 시행되었던 소방법은 다양한 영역의 소방 행정 분야를 소방법이라는 단일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내용과 체계가 복잡 다양하여 쉽게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방 관련 기타 법령과도 일관성 및 연계성이 부족하였다.
- ② 소방법의 분법 : 2003년 5월 29일 소방법을 4개의 법으로 분법 되면서, 종전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내용을 분리하여 「소방시설법」을 제정하였다.
- ③ 소방시설법 개정 : 2016년 법명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소방시설 외에 화재예방 및 피해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였다.

####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분법

- ① 종전의 소방시설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화재 예방 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었다.
- ② 분법 :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종전의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었다.

### 2 소방시설법의 구성

#### (1) 소방시설법의 구성

소방시설법은 기존 소방법의 제4장(소방시설 등의 기준 등) 및 제5장(소방용품의 형식승인) 규정을 근간으로 하여 제정되었으며, 21년 12월 전부 개정되어 7장 61조로 구성되어 있다.

|                      |  |
|----------------------|--|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br>제2조 (정의)<br>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br>제4조 (관계인의 의무)<br>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제2장 소방시설의 설치·관리 및 방염 | 제6조 (건축허가등의 동의)<br>제7조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br>제8조 (성능위주설계)<br>제9조 (성능위주설계평가단)<br>제10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br>제11조 (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

- ④ 단원의 임기 : 위촉된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⑥ 평가단장 :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평가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평가단장이 미리 지정한 평가단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3) 평가단의 운영(규칙 제11조)

- ① 평가단의 회의 : 평가단장과 평가단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6명 이상 8명 이하의 평가단원으로 구성·운영하며,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평가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성능위주설계의 변경신고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성능위주설계를 검토·평가한 평가단원 중 5명 이상으로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수당의 지급 : 평가단의 회의에 참석한 평가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방공무원인 평가단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평가단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③ 운영의 세부사항 : 위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 또는 관할 소방본부장이 정한다.

### (4) 평가단원의 제척(除斥)·기피·회피(규칙 제12조)

- ① 평가단원의 제척 : 단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단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 평가단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 그 임원 포함)가 되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 평가단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 ㉢ 평가단원이 해당 안전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 평가단원이나 평가단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평가단원의 기피 : 당사자는 제척사유가 있거나 평가단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단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평가단은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평가단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평가단원의 회피 : 평가단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5) 평가단원의 해임·해촉(규칙 제13조)

소방청장 또는 관할 소방본부장은 평가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단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 ①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②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③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평가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⑤ 평가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⑬ ④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 ⑭ ④에 해당하지 않는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연면적 관련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

연면적 600㎡ 이상 : 근린생활시설(목욕장 제외), 의료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 : 목욕장, 문화 및 집회, 종교, 운동, 자동차, 운수, 공장·창고, 판매, 방송통신시설

연면적 2,000제㎡ 이상 :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4) 시각경보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①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 ②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발전시설 및 장례시설
- ③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 ④ 지하가 중 지하상가

**(5)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시행, 23.12.1.)**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으로 한다.

**(6)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지하가 중 터널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

- ① 연면적 3천5백㎡ 이상인 것은 모든 층
- ②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 ③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7)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방재실 등 화재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24시간 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① 노유자 생활시설
- ② 노유자 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 ③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 ④ 문화재 중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⑤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 ㉡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 (2) 인명구조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22년 소방교

- ①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인공소생기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것 중 관광호텔 용도로 사용하는 층
- ②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중 병원 용도로 사용하는 층
- ③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 ㉡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 ㉢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 ㉣ 지하가 중 지하상가
  - ㉤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이산화탄소소화설비(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실전연습

Q.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닌 것은? ★ 22년 소방교

- ① 지하구
- ②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 ③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 ④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해설 | 지하구는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니다.

↔ ①

## (3) 유도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하구는 제외에서 삭제되어 지하구에도 유도등을 설치해야 함)
  -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로서 가축을 직접 가두어 사육하는 부분
  - ㉡ 지하가 중 터널
- ② 객석유도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
  - ㉠ 유흥주점영업시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 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 나이트클럽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시설만 해당)
  - ㉡ 문화 및 집회시설
  - ㉢ 종교시설
  - ㉣ 운동시설

- ㉔ 간이피난유도선 :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난구 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 ㉕ 비상조명등 : 화재가 발생한 경우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동 점등되는 조명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 ㉖ 방화포 : 용접·용단 등의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로부터 가연물이 점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천 또는 불연성 물품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 ③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대상 :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 및 규모는 다음(영 별표 8 제2호)과 같다. ★ 20년 소방교, 소방장, 17년 소방교
- ㉑ 소화기 :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을 위한 공사 중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작업의 현장에 설치한다.
  - ㉒ 간이소화장치 : 연면적 3천㎡ 이상이거나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층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 ㉓ 비상경보장치 : 연면적 400㎡ 이상이거나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 ㉔ 가스누설경보기 : 바닥면적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 ㉕ 간이피난유도선 : 바닥면적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 ㉖ 비상조명등 :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 ㉗ 방화포 : 용접·용단 작업이 진행되는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 ④ 임시소방시설과 유사한 소방시설 :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로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은 다음(영 별표 8 제3호)과 같다. ★ 22년 소방교
- ㉑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소화기(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인근에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 ㉒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 ㉓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

### 실전연습

Q.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임시소방시설 중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22년 소방교

- ① 피난유도선
- ② 비상조명등
- ③ 피난구유도등
- ④ 피난구유도표지

해설 |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은 ①,②,③이다.

→ ④



- ①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기숙사 및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모든 층
  - ②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 ③ 근린생활시설(목욕장 제외),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 제외), 위탁시설,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 이상인 것
  - ④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 휴게시설, 연 1천㎡ 이상 지하가(터널 제외)
  - ⑤ 교육연구시설(기숙사 및 합숙소 포함), 수련시설(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하며,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은 제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 제외) 또는 묘지 관련 시설로서 연면적 2천㎡ 이상인 것
  - ⑥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 제외), 지하구,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노유자 생활시설(모든 층),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 ⑦ 연면적 400㎡ 이상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 수용인원 100명 이상
  - ⑧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이거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이 설치된 시설
  - ⑨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m 이상인 것
  - ⑩ 특수가연물을 500배 이상 저장·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
- 4) 시각경보기 : 자탐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①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 ②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탁시설, 창고시설(물류터미널), 발전시설 및 장례시설
  - ③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 ④ 지하가 중 지하상가
- 5) 비상방송설비(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지하가 중 터널, 축사 및 지하구는 제외)
- ① 연면적 3천5백㎡ 이상인 것은 모든 층
  - ②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 ③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 6) 자동화재속보설비 : 방재실 등 화재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24시간 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① 노유자 생활시설
  - ②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 ③ 문화재 중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④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 ⑤ 의료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 ㉡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 ⑥ ①에 해당하지 않는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 ⑦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 7) 통합감시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지하구로 한다.
- 8) 누전경보기(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 제외) : 계약전류용량이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 9)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
-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 ②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장례시설

- 37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sup>2</sup>m 이상인 것과 기숙사(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 수용을 위한 것을 말한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sup>2</sup>m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38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이 600<sup>2</sup>m 미만인 시설,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sup>2</sup>m 이상인 것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39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sup>2</sup>m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40 노유자 생활시설과 노유자 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sup>2</sup>m 이상 600<sup>2</sup>m 미만인 시설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41 숙박시설 중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sup>2</sup>m 이상인 것과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sup>2</sup>m 이상인 것은 모든 층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42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항공기 격납고와 주차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800<sup>2</sup>m 이상인 것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43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sup>2</sup>m 이상인 것과 「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를 이용하여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것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44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천<sup>2</sup>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이다. ( )
- 45 연면적 400<sup>2</sup>m 이상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sup>2</sup>m(공연장의 경우 100<sup>2</sup>m) 이상인 것과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은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46 연면적 3천5백<sup>2</sup>m 이상인 것,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에는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47 누전경보기는 계약전류용량(같은 건축물에 계약 종류가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중 최대계약전류 용량을 말한다)이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 )
- 48 근린생활시설(목욕장은 제외),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은 제외), 위락시설, 장례시설 및 복합 건축물로서 연면적 600<sup>2</sup>m 이상인 것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

답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 38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연면적 400㎡인 여관
- ②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10㎡인 공연장
- ③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인 것
- ④ 40명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해설** ④ 틀림,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지하구, 모래·석재 등 불연재료 창고 및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 연면적 400㎡(지하가 중 터널 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은 제외한다) 이상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공연장의 경우 100㎡) 이상인 것  
 ㉡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 39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틀린 것은?

- ① 근린생활시설(목욕장을 포함한다)로서 연면적 6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 ②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m 이상인 것
- ③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 ④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로서 연면적 2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해설** ③, ④ 맞음,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교육연구시설(교육시설 내 기숙사 및 합숙소 포함), 수련시설(수련시설 내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하며,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 제외)로서 연면적 2천㎡ 이상인 것이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이다.  
 ㉠ 틀림, 근린생활시설(목욕장은 제외),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은 제외), 위락시설,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 이상인 것이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이다.

### 40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틀린 것은?

- ① 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또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1천㎡ 미만인 것
- ②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
- ③ 연면적 400㎡ 미만의 유치원
- ④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해설** ① 틀림,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 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또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2천㎡ 미만인 것  
 ㉡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  
 ㉢ 연면적 400㎡ 미만의 유치원  
 ㉣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정답 38. ④ 39. ① 40. ①





### 69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 및 규모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 비상경보장치 : 연면적 400㎡ 이상이거나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 ② 소화기 : 건축허가등을 할 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 중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 ③ 간이피난유도선 : 바닥면적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 ④ 가스누설경보기 : 바닥면적 10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현장에 설치한다.

해설 - ④ 틀림, 가스누설경보기, 간이피난유도선, 비상경보장치 및 비상조명등은 모두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영 별표 8 제2호)

### 70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로서 간이소화장치의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은?

- ①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 ②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소화기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 ③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
- ④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시각경보기

해설 - ② 맞음,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로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은 다음의 별표 5의2 제3호와 같다.

- ㉠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소화기(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인근에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 ㉡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 ㉢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

### 7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중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 시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 ① 옥내소화전설비
- ② 자동화재탐지설비
- ③ 옥외소화전설비
- ④ 스프링클러설비

해설 - ② 맞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 다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 ㉠ 공동구에 설치하는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및 연소방지설비
  - ㉡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에 설치하는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통합감시시설 등
  - ㉢ 노유자(老幼者)시설, 의료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것

정답 69. ④ 70. ② 71. ②

## 72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중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 시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것은?

- ①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구조설비 등의 소방시설
- ② 지하구 가운데 공동구 및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 ③ 노유자(老幼者)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 ④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해설 ③ 틀림,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 ㉠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 공동구에 설치하는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및 연소방지설비
- ㉢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에 설치하는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및 연소방지설비
- ㉣ 노유자(老幼者)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 ㉤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 73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경우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없는 소화설비는?

- ① 스프링클러설비
- ② 옥내소화전설비
- ③ 소화기구
- ④ 물분무소화설비

해설 ③ 맞음,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는 소화설비로는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옥내소화전, 자동소화장치 등이 있다.

## 74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으로 틀린 것은?

- ①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②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차고·주차장에 스프링클러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③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2개 이상의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연동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④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 분말소화기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해설 ④ 틀림,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분말소화기의 설치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를 면제받을 수는 없다.

정답 72. ③ 73. ③ 74. ④



### 75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자동소화장치(주거용 및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포함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② 비상경보설비 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③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비상경보설비와 같은 수준 이상의 음향을 발하는 장치를 부설한 방송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④ 피난구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상황에 따라 피난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가 면제된다.

해설 - ① 틀림, 자동소화장치(주거용 및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76 연결살수설비를 면제할 수 있는 요건으로 틀린 것은?

- ①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송수구를 부설한 스프링클러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②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③ 물분무장치 등에 소방대가 사용할 수 있는 연결송수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 ④ 물분무장치 등에 4시간 이상 공급할 수 있는 수원이 확보된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해설 - ④ 틀림, 가스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물분무장치 등에 소방대가 사용할 수 있는 연결송수구가 설치되거나 물분무장치 등에 6시간 이상 공급할 수 있는 수원이 확보된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 77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면제할 수 있는 요건으로 틀린 것은?

- ①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 ② 옥내소화전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 ③ 건식 스프링클러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 ④ 습식 스프링클러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해설 - ② 틀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감지·수신·경보기능)과 성능을 가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정답 75. ① 76. ④ 77. ②



- 11 작동점검의 시기는 종합점검 대상은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3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하며, 그 밖의 작동점검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 )
- 12 건축물에 대한 작동점검은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기입된 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점검한다. ( )
- 13 법 제22조 제1항제1호(해당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은 종합점검의 대상이다. ( )
- 1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의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것은 종합점검의 대상이다. ( )
- 15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제조소등은 제외한다)은 종합점검의 대상이다. ( )
- 16 종합점검은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할 수 있으며, 관계인과 특급점검자는 점검할 수 없다. ( )
- 17 종합점검은 연 1회 이상 「화재의 예방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분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 )
- 18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 종합점검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 )
- 19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자체점검 대상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연도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종합점검을 할 수 있다. ( )
- 20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상태를 맨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외관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 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 )
- 21 공동주택(아파트 등으로 한정)의 관리자(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한다) 및 입주민(세대 거주자를 말한다)은 2년 이내 모든 세대에 대하여 점검을 해야 한다. ( )
- 22 공동주택의 관리자는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매년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 점검하도록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
- 23 공동주택의 관리자는 세대별 점검현황(입주민 부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점검을 하지 못한 세대 현황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 )

답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 18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하는 경우 점검인력 1단위의 구성으로 맞는 것은?

- ① 소방시설관리사 1명과 보조 기술인력 2명
- ②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특급점검자 1명과 보조 기술인력 2명
- ③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특급점검자 1명과 보조 기술인력 4명
- ④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1명과 보조 기술인력 2명

**해설** ② 맞음,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특급점검자 1명과 보조 기술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2명(같은 건축물을 점검할 때에는 4명) 이내의 보조 기술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④ 틀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 점검인력 1단위이다. 이 경우 점검인력 1단위에 2명 이내의 보조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 19 다음 중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 ①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특급점검자 1명과 보조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2명 이내의 보조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 ②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 같은 건축물을 점검할 때에는 점검인력 1단위에 4명 이내의 보조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 ③ 관계인이 점검하는 경우 관계인 1명과 보조 기술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할 수 있다.
- ④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보조인력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할 수 있다.

**해설** ①, ② 맞음,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특급점검자 1명과 보조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2명(같은 건축물을 점검할 때에는 4명) 이내의 보조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④ 틀림,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하는 경우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1명과 보조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보조인력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리자, 점유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할 수 있다.

## 20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으로 옳은 것은?

- ① 종합점검 : 6,000㎡, 작동점검 : 8,000㎡
- ② 종합점검 : 7,000㎡, 작동점검 : 9,000㎡
- ③ 종합점검 : 8,000㎡, 작동점검 : 10,000㎡
- ④ 종합점검 : 10,000㎡, 작동점검 : 12,000㎡

**해설** ③ 맞음,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은 다음과 같다.  
 ㉠ 종합점검 : 8,000㎡    ㉡ 작동점검 : 10,000㎡

**정답** 18. ②    19. ④    20. ③

## (2) 응시자격(영 부칙 제6조 제1항 : 2026.12.31까지 적용)

- ①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②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③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④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⑤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 포함) 분야를 전공한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⑦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⑧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⑨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⑩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사람 :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급 3년 이상 실무경력, 2급 5년 이상 실무경력, 3급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⑪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 시험의 시행방법(영 제38조)

- ① 시험의 단계 :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같은 날에 시행할 수 있다.
- ② 시험의 방법 : 제1차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고, 제2차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제2차시험에는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 ③ 제1차시험의 면제 :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관리사시험만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면제받으려는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 ④ 제2차시험 :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후단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행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의 제2차시험 응시는 무효로 한다.



#### (4) 시험의 과목(영 부칙 제6조 제2항)

관리사시험의 시험과목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21월 31일까지는 다음의 과목으로 한다.

##### ① 제1차시험

- ㉠ 소방안전관리론(연소 및 소화, 화재예방관리, 건축물소방안전기준, 인원수용 및 피난계획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 및 화재역학[화재성상, 화재하중(火災荷重), 열전달, 화염 확산, 연소 속도, 구획화재, 연소생성물 및 연기의 생성·이동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 ㉡ 소방수리학,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소방 관련 전기공사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
- ㉢ 다음의 소방 관련 법령
  - ㉠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 ㉤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고장진단 및 정비를 포함한다)

##### ② 제2차시험

- ㉠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을 포함한다)
- ㉡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규칙 별표 6] 소방시설관리사시험 과목의 세부항목(제28조 관련) 시행 2027.1.1

##### 1. 제1차시험 과목의 세부 항목

| 과목명                     | 주요 항목     | 세부 항목                  |
|-------------------------|-----------|------------------------|
| 소방안전관리론                 | 연소이론      | 연소 및 연소현상              |
|                         | 화재현상      | 화재 및 화재현상<br>건축물의 화재현상 |
|                         | 위험물       | 위험물 안전관리               |
|                         | 소방안전      | 소방안전관리<br>소화론<br>소화약제  |
| 소방기계 점검실무               | 소방유체역학    | 유체의 기본적 성질             |
|                         |           | 유체정역학                  |
|                         |           | 유체유동의 해석               |
|                         |           | 관내의 유동                 |
|                         | 소방 관련 열역학 | 펌프 및 송풍기의 성능 특성        |
| 열역학 기초 및 열역학 법칙<br>상태변화 |           |                        |





2. 제2차시험 과목의 세부 항목

| 과목명        | 주요 항목             | 세부 항목                         |
|------------|-------------------|-------------------------------|
| 소방시설등 점검실무 | 소방대상물 확인 및 분석     | 대상물 분석하기                      |
|            |                   | 소방시설 구성요소 분석                  |
|            |                   | 소방시설 설계계산서 분석                 |
|            | 소방시설 점검           | 현황자료 검토                       |
|            |                   | 소방시설 시공상태 점검                  |
|            |                   | 소방시설 작동 및 종합 점검               |
| 소방시설 유지관리  | 소방시설의 운용 및 유지관리   |                               |
|            | 소방시설의 유지보수 및 일상점검 |                               |
| 소방시설등 관리실무 | 관련 서류의 작성         | 소방계획서의 작성                     |
|            |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서 작성             |
|            |                   | 각종 소방시설등 점검표의 작성              |
|            |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 소방시설 유지관리계획서 작성<br>인력 및 장비 운영 |

(5) 시험위원의 임명·위촉(영 제40조)

- ① 시험위원의 임명 : 소방청장은 관리사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해야 한다.
  - ㉠ 소방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 ㉡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 ㉢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 ㉣ 소방시설관리사
  - ㉤ 소방기술사
- ② 시험위원의 수 : 시험위원의 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 ㉠ 출제위원 : 시험 과목별 3명
  - ㉡ 채점위원 : 시험 과목별 5명 이내(제2차시험의 경우로 한정한다)
- ③ 준수사항 :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시험문제 등의 출제 시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 ④ 수당과 여비 : 임명되거나 위촉된 시험위원과 시험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6) 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영 부칙 제6조 제2항 및 제3항)\* 17년 소방교

- ① 제1차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 관리사시험의 제1차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면제과목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 및 ㉡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이 선택한 한 과목만 면제받을 수 있다.
  - ㉠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실무경력 : 소방수리학,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

- ㉠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 관련 법령
- ② 제2차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 관리사시험의 제2차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면제과목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 및 ㉡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이 선택한 한 과목만 면제받을 수 있다.
  - ㉠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 ㉡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

#### (7) 시험의 시행 및 공고(영 제42조)

- ① 시험의 시행 : 관리사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 ② 시험의 공고 : 소방청장은 관리사시험을 시행하려면 응시자격, 시험 과목, 일시·장소 및 응시절차 등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관리사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8) 응시원서 제출 등(영 제43조)

- ① 응시원서의 제출 : 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사시험 응시원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응시원서에 면제과목과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 ③ 증명서류의 제출 : 관리사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자격에 관한 증명서류를 소방청장이 정하는 원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며, 증명서류는 해당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은 제외한다) 사본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력·재직증명서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이 발행하는 경력증명서로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증명하는 경력증명원은 해당 기관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를 수 있다.
- ④ 행정정보 확인사항 : 응시원서를 받은 소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 ㉠ 응시자의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9)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영 제44조)

- ① 제1차시험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 04

## 핵심요약

소방시설  
관리사  
자격시험

- 1)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
  - ① 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관리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②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 방법, 시험 과목,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응시자격
  - ①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②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③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④ 이공계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⑤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 분야 전공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자
  - ⑦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⑧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⑨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⑩ 소방안전관리자 : 특급 2년 이상, 1급 3년 이상, 2급 5년 이상, 3급 7년 이상 실무경력
  - ⑪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 시험의 시행방법
  - ① 시험의 단계 : 제1차시험(선택형)과 제2차시험(논문형, 기입형 포함 가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소방청장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같은 날에 시행할 수 있다.
  - ②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관리사시험만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 4) 시험의 과목
  - ① 제1차시험
    - ㉠ 소방안전관리론
    - ㉡ 소방수리학,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
    - ㉢ 소방 관련 법령 : 소방기본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 소방시설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령, 다중이용업소법령
    - ㉣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 ㉤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고장진단 및 정비를 포함한다)
  - ② 제2차시험
    - ㉠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을 포함한다)
    - ㉡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               |  |
|---------------|--|
|               | <p>5) 시험의 위원</p> <p>① 시험위원의 임명 : 소방청장은 관리사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p> <p>㉠ 소방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방안전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 2년 이상 재직한 사람</p> <p>㉡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p> <p>㉢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p> <p>② 위원의 수</p> <p>㉠ 출제위원 : 시험 과목별 3명</p> <p>㉡ 채점위원 : 시험 과목별 5명 이내(제2차시험의 경우)</p> <p>6) 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p> <p>① 제1차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p> <p>㉠ 소방기술사 자격취득 후 15년 이상 소방실무경력 : 소방수리학,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p> <p>㉡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 관련 법령</p> <p>② 제2차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이 선택한 한 과목만 면제</p> <p>㉠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p> <p>㉡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p> <p>7) 시험의 시행 및 공고</p> <p>① 시험의 시행 : 관리사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p> <p>② 시험의 공고 : 소방청장은 관리사시험을 시행하려면 응시자격, 시험 과목, 일시·장소 및 응시절차 등을 시행일 9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p> <p>8) 응시원서 제출</p> <p>① 응시원서 :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응시원서를 청장에게 제출해야 함</p> <p>② 증명서류 : 해당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제외) 사본과 경력·재직증명서</p> <p>③ 행정정보 확인사항 : 소방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응시자의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p> <p>9) 시험의 합격자 결정</p> <p>① 제1차시험 : 과목당 100점 만점,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p> <p>② 제2차시험 : 과목당 100점 만점,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모든 과목에서 40점 이상, 전 과목에서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p> <p>③ 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p> |
| <p>결격사유 등</p> | <p>1)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 소방청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p> <p>2) 소방시설관리사의 결격사유</p> <p>① 피성년후견인</p> <p>② 이 법(소방시설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③ 위 동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p> <p>④ 자격이 취소(①에 해당하여 자격 취소된 경우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

## 04

## 적중 0X 문제

- 01 소방시설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관리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관리사시험의 응시 자격, 시험 방법, 시험 과목, 그 밖에 관리사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02 소방설비기사 및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
- 03 소방안전공학 분야를 전공한 후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
- 04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과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
- 05 관리사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소방청장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같은 날에 시행할 수 있다. ( )
- 06 관리사 제2차시험의 과목은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을 포함한다)와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고장진단 및 정비를 포함한다)이다. ( )
- 07 소방청장은 관리사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이거나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 조교수로 2년 재직한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
- 08 관리사 시험의 출제위원은 시험 과목별 3명, 채점위원은 시험 과목별 5명 이내(제2차시험의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 )
- 09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15년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1차과목은 소방수리학, 약제화학 및 소방 전기과목을 제2차과목은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 )
- 10 관리사시험은 2년마다 1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 )
- 11 소방청장은 관리사시험을 시행하려면 응시자격, 시험 과목, 일시·장소 및 응시절차 등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관리사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

답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 25 시·도지사는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결과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거나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
- 26 관리업자는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렸거나 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해야 한다. ( )
- 27 관리업의 등록이 취소(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
- 28 관리업자는 등록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
- 29 관리업 등록사항에서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기술 인력을 말한다. ( )
- 30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 신고서 포함)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31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과 소방기술인력대장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32 시·도지사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발급하거나 제출된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과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경력수첩 포함)에 그 변경된 사항을 적은 후 내주어야 한다. ( )
- 33 관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며,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이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
- 34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결격사유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35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 소방시설관리업 지위승계 신고서 등에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소방기술인력대장에 기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36 관리업자는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거나 관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소방시설등의 점검업무를 수행하게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

답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 04 소방시설관리사의 시험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관리사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② 제1차 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제2차 시험의 경우에는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 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2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 ④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해설** - ① 맞음, 관리사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같은 날에 시행할 수 있다.  
 ③ 틀림,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관리사시험만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면제받으려는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④ 맞음,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후단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행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의 제2차시험 응시는 무효로 한다.

#### 05 관리사시험에서 제2차 시험과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묶은 것은?

- ①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 ② 소방안전관리론,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 ③ 소방 관련 법령,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
- ④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 소방수리학,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

**해설** - ① 맞음, 관리사 시험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 제1차 : 소방안전관리론, 소방수리학,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 소방 관련 법령,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고장진단 및 정비 포함)  
 ㉡ 제2차 :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 포함),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 06 관리사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위한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없는 사람은?

- ① 소방시설관리사
- ②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 ③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 ④ 소방 관련 분야의 박사 또는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해설** - ④ 틀림, 소방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소방청장은 관리사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 소방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정답** 04. ③ 05. ① 06. ④



### 07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관리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② 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시험 방법, 시험 과목, 시험 위원, 그 밖에 관리사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③ 관리사 시험의 출제위원은 시험 과목별 3명, 채점위원은 시험 과목별 5명 이내로 한다.
- ④ 임명되거나 위촉된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해설** ② 틀림, 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시험 방법, 시험 과목, 시험 위원, 그 밖에 관리사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제25조 제2항)  
 ④ 맞음, 임명되거나 위촉된 시험위원과 시험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영 제40조 제4항)

### 08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면제받을 수 있는 과목은?

- ① 제1차 시험과목 중 소방 관련 법령
- ② 제1차 시험과목 중 소방수리학,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
- ③ 제2차 시험과목 중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과목
- ④ 제2차 시험과목 중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

**해설** ④ 맞음, 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면제과목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이 선택한 한 과목만 면제받을 수 있다.  
 ㉠ 제1차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자 : 소방수리학,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  
 ㉠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 관련 법령  
 ㉡ 제2차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

### 09 다음 중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의 원칙적 시행으로 옳은 것은?

- ① 매년 1회
- ② 2년마다 2회
- ③ 2년마다 1회
- ④ 필요시

**해설** ① 맞음, 관리사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영 제42조 제1항)

**정답** 07. ② 08. ④ 09. ①

### 34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 ① 관리업자는 소방시설법령 등에 맞게 소방시설등을 점검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 ② 관리업자는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 ③ 관리업자는 자체점검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인력을 참여시켜야 한다.
- ④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관리업자는 그 날부터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거나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③ 틀림, 자체점검을 하거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술인력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맞음,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관리업자는 그 날부터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거나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영업정지처분의 경우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행 또는 점검 중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과 자체점검은 할 수 있다.

### 35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소방청장은 관계인이 적정한 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리업자의 신청과 관계없이 해당 관리업자의 점검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② 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하려는 관리업자는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방법,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④ 소방청장은 점검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관리업자의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점검실적, 행정처분이력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해설** ① 틀림, 소방청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적정한 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관리업자의 점검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법 제34조 제1항)  
 ②,③,④ 맞음, 법 제34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이다.

### 36 관계인이 적정한 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관리업자의 점검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다음 중 점검능력 평가요소가 아닌 것은?

- ① 대행실적
- ② 기술력
- ③ 신인도
- ④ 점검장비

**해설** ④ 틀림, 점검능력 평가 항목은 i) 대행실적(화재예방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한 실적을 말한다), ii) 점검실적(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실적을 말한다. 이 경우 점검실적은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것만 인정한다), iii) 기술력, iv) 경력, v) 신인도 등이다.

**정답** 34. ③ 35. ① 36. ④

#### 40 다음 중 상시 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있는 자가 아닌 것은?

- ① 신규로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 ②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 ③ 점검능력 평가 공시 후 다시 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하는 자
- ④ 첨부 서류의 보완 요청을 받은 자

**해설** ④ 틀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시 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규칙 제37조 제3항)

- ㉠ 법 제29조에 따라 신규로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 ㉡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 ㉢ 제38조제3항에 따라 점검능력 평가 공시 후 다시 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하는 자

#### 41 다음 중 소방시설관리업의 당연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②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③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④ 다른 자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해설** ② 틀림, 등록의 취소와 영업의 정지의 사유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등록취소
- ㉡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다만, 법인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선임한 경우는 제외) : 등록취소
- ㉢ 다른 자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 등록취소
- ㉣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체점검한 경우 :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등록취소이며, 거짓으로 한 경우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등록취소
- ㉤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1차 경고(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등록취소

#### 42 소방시설관리업의 행정처분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1차 행정처분은 등록취소이다.
- ②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차 행정처분은 경고(시정명령)이다.
- ③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차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6개월이다.
- ④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3차 행정처분은 등록취소이다.

**해설** ① 맞음,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모두 1차 행정처분이 등록취소이다.

- ③ 틀림,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차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3개월이다.

**정답** 40. ④ 41. ② 42. ③





**(7) 규제의 재검토(영 제51조)**

소방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①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 2022년 12월 1일
- ② 제8조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 2023.3.7. 삭제
- ③ 제11조 및 별표 4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수용인원 및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 2022년 12월 1일
- ④ 제13조에 따른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 2022년 12월 1일
- ⑤ 제1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2022년 12월 1일
- ⑥ 제18조 및 별표 8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 2022년 12월 1일
- ⑦ 제30조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2022년 12월 1일
- ⑧ 제31조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 2022년 12월 1일





### 15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으로 옳지 못한 것은?

- ①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한 자
- ②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 ③ 법을 위반하여 임시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지 아니한 자
- ④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해설** ③ 틀림,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할 수 있다.  
 ①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한 자  
 ②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④ 제16조제1항 각 호(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16 소방시설법의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누구든지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관리하지 하지 아니한 자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반행위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이를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③ 통지는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를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해설** ② 틀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이를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의 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 통지서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규칙 제43조 제1항).

### 17 소방시설법령의 보칙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 ① 조치명령등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 등은 조치명령등의 이행기간 만료일 5일 전까지 조치명령등의 연기신청서 등을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③ 시·도지사는 관리업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④ 소방청장은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에 대하여 22년 12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설** ① 맞음, 관계인 등은 조치명령등의 이행기간 만료일 5일 전까지 연기신청서에 조치명령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틀림,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정답** 15. ③ 16. ② 17. ②



### 3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청장이 청문할 수 없는 것은? \* 17년 인천 소방장

- ①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정지
- ②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취소
- ③ 우수품질 인증의 취소
- ④ 전문기관의 제품검사 업무정지

**해설** ② 틀림,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법 제44조) 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처분은 시·도지사가 하므로 시·도지사는 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나머지의 처분을 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 ㉠ 소방청장의 청문 : 관리자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취소 및 제품검사 중지, 성능인증의 취소, 우수품질인증의 취소,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 ㉡ 시·도지사의 청문 : 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 34 다음 중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7년 소방교 수정

- ① 방염성능검사서 거짓 시료를 제출한 자
- ②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에 합격표시를 한 자
- ③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 ④ 관계인에게 중대위반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관리업자등

**해설** ③ 틀림, 이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 제9조제2항(평가단에 소속된 사람) 및 제50조제7항(위탁받은 업무종사자)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
- ㉡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 ㉢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 시료를 제출한 자
- ㉣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관계인 또는 관계인에게 중대위반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관리업자등

### 3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 에서 소속 기술인력의 참여 없이 자체점검을 한 경우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1차 위반에 대한 개별기준은?

- ① 50 만원
- ② 100 만원
- ③ 200 만원
- ④ 300 만원

**해설** ④ 맞음, 법 제33조제4항(관리업자는 자체점검을 하거나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을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술인력을 참여시켜야 한다)을 위반하여 소속 기술인력의 참여 없이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 33. ② 34. ③ 35. ④



39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9년 소방장

- ①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 등의 행위를 한 자는 신고의 대상이다.
-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반행위의 신고내용을 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이 아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차단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신고의 대상이다.
- ④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해설 - ② 틀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반행위의 신고내용을 이를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 통지서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④ 맞음, 통지는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2항)

40 소방시설법의 양벌규정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중 양벌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 19년 소방장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 ①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 ② 휴업·폐업의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관리업자
- ③ 방염성능검사에서 거짓 시료를 제출한 자
- ④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아니한 관계인

해설 - ③ 맞음, 방염성능검사에서 거짓 시료를 제출한 자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틀림, 이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의 부과대상이므로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4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의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9년 소방교

- ①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 ③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지 아니하지 아니한 경우 2차 위반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해설 - ④ 틀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정답 39. ② 40. ③ 41. ④



**07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가 등의 책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안전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관계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화재예방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④ 틀림, 관계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화재예방정책에 맞추어 자체적인 화재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해설** ①, ② 맞음,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안전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④ 틀림, 관계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화재예방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자체적인 화재예방계획을 수립할 필요는 없다.

**08 소방청장은 화재예방정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기반 확충을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는가?**

- ① 매년
- ② 3년
- ③ 5년
- ④ 10년

**해설** ③ 맞음, 소방청장은 화재예방정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기반 확충을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0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 화재안전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②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 ③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
- ④ 화재안전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해설** ④ 틀림, ④는 **세부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화재안전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법령·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과 대국민 교육·홍보  
 ㉢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 산업의 국제경쟁력 향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화재발생 현황, 소방시설의 설치·관리 및 화재안전기준의 개선에 관한 사항, 계절별·시기별·소방대상물별 화재예방대책의 추진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정답** 07. ④ 08. ③ 09. ④



## 16 화재의 예방 등에 관한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소방대상물의 용도별·규모별 현황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 등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①, ② 맞음,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소방대상물의 용도별·규모별 현황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틀림,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17 화재의 예방 등에 관한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의 사항으로 옳지 못한 것은?

- ①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소방대상물의 용도별·규모별 현황
- ③ 소방대상물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현황
- ④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 설치·관리 현황

**해설** ① 틀림,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소방대상물의 용도별·규모별 현황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수립·시행하는 세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는 할 수 없다.

## 18 다음 중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 ① 실태조사는 통계조사, 문헌조사 또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적인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 ② 소방청장은 실태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사유 및 조사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 ③ 관계 공무원 및 실태조사를 의뢰받은 관계 전문가 등이 실태조사를 위하여 소방대상물에 출입할 때에는 그 권한 또는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④ 소방청장은 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해설** ② 틀림, 소방청장은 실태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사유 및 조사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규칙 제2조 제2항)  
①, ③, ④ 맞음, 규칙 제2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제5항 규정이다.

**정답** 16. ④ 17. ① 18. ②

## CHAPTER

## 화재안전조사 등

## 02

## 적중 0X 문제

- 01 화재안전조사는 소방관서장이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이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시하는 현장조사·문서열람·보고요구 등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 ( )
- 02 소방시설법에 따른 자체점검이 불성실하거나 불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이 불성실하거나 불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
- 03 소방관서장은 화재,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
- 04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범죄수사의 목적을 위하여 화재안전조사를 할 수 있다. ( )
- 05 개인의 주거(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정한다. ( )
- 06 화재안전조사의 항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며, 조사의 항목에는 화재의 예방조치 상황, 소방시설등의 관리 상황 및 소방대상물의 화재 등의 발생 위험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07 화재안전조사는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실시하며, 소방시설, 피난시설·방화구획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없다. ( )
- 08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조사의 목적에 따라 화재안전조사의 항목 전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실시하거나 특정 항목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
- 09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우편, 전화, 전자메일 또는 문자전송 등을 통하여 통지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5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 )
- 10 화재안전조사는 관계인의 승낙 없이 소방대상물의 공개시간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는 할 수 없다. 다만,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답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 24 화재안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는 그 권한 또는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
- 25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안전조사의 현장에서 관계인에게 조사의 결과를 설명하고 화재안전조사 결과서의 부분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26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조치명령의 내용으로는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가 있다. ( )
- 27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되었거나 소방시설등, 피난 시설·방화구획, 방화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
- 28 화재예방 등을 위한 조치명령의 요건은 화재안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나 재난·재해 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이다. ( )
- 29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조치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 )
- 30 소방청장은 건축, 전기 및 가스 등 화재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소방활동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을 연계하여 구축할 수 있다. ( )
- 31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조치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 손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관련 사진 및 그 밖의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해야 한다. ( )
- 32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시가(時價)로 보상해야 하며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명령조치권자인 소방관서장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해야 한다. ( )
- 33 조치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손실보상 청구서에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소방청장,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
- 34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 )
- 35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 )

답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CHAPTER

화재의 예방조치

03

적중 0X 문제

- 01 누구든지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이에 준하는 위험물 제조소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모닥불, 흡연 등 화기의 취급,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 및 위험물을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 02 소방관서장은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관계인에게 소방차량의 통행이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건의 이동 명령을 할 수 있다. ( )
- 03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비치 또는 설치한 장소에서 화기 등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모닥불, 흡연 등 화기의 취급이나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할 수 있다. ( )
- 04 소방관서장은 화재예방 안전조치 협의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화재예방 안전조치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3일 이내에 화재예방 안전조치 협의 결과 통보서를 협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
- 05 소방관서장은 목재, 플라스틱 등 가연성이 큰 물건의 제거 등에 해당하는 물건, 소방차량의 통행이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물건을 옮기거나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
- 06 소방관서장이 소방차량의 통행이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건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옮긴 경우 그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 후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
- 07 소방관서장은 옮긴 물건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14일 동안 해당 소방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 )
- 08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은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로 한다. ( )
- 09 소방관서장은 보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는 보관하고 있는 옮긴 물건등을 매각하여야 하며, 매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세입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10 보관하고 있는 옮긴 물건등이 부패·파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정해진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 )

답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 23 면화류는 200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특수가연물이고 대팻밥, 녕마 및 종이부스러기, 사료, 볏짚류는 1000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특수가연물이다. ( )
- 24 나무껍질 및 대팻밥은 400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특수가연물이며, 목재가공품 및 나무부스러기는 20세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특수가연물이다. ( )
- 25 가연성고체류와 발포시킨 것 외의 합성수지류는 3,000킬로그램 이상, 가연성 액체류는 2세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특수가연물이다. ( )
- 26 면화류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면상 또는 팽이모양의 섬유와 마사(麻絲) 원료를 말하며, 사료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실(실부스러기와 솜털을 포함)과 누에고치를 말한다. ( )
- 27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 100도 미만인 것과 인화점이 200도 이상이고 연소열량이 1그램당 8킬로칼로리 이상인 것으로서 녹는점(융점)이 100도 이상인 것은 가연성 고체류이다. ( )
- 28 가연성 액체류는 1기압과 섭씨 2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wt%)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 70도 미만이고 연소점이 60도 이상인 것이다. ( )
- 29 고무류·프라스틱류(합성수지류)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고체의 합성수지제품, 합성수지반제품, 원료합성수지 및 합성수지 부스러기(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고무제품, 고무반제품, 원료고무 및 고무부스러기를 포함)를 말한다. ( )
- 30 특수가연물은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아야 하며, 쌓는 높이는 10미터 이하,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50제곱미터(석탄·목탄류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며,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는 실내의 경우 1미터 또는 쌓는 높이의 1/2 중 큰 값 이상으로 간격을 두어야 한다. ( )
- 31 특수가연물의 저장 기준에서 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방사능력 범위에 해당 특수가연물이 포함되도록 대형 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쌓는 높이를 15미터 이하,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을 200제곱미터(석탄·목탄류의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 )
- 32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 최대저장수량, 단위부피당 질량 또는 단위체적당 질량, 관리책임자 성명·직책, 연락처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시가 포함된 특수가연물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 )
- 33 특수가연물 표지는 한 변의 길이가 0.3미터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미터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하고 특수가연물 표지 중 화기엄금 표시 부분의 바탕은 흰색으로, 문자는 붉은색으로 하여야 한다. ( )
- 34 시·도지사는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지역이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

답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 35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등은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대상지역이다. ( )
- 36 시·도지사가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청장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의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을 명할 수 있다. ( )
- 37 소방관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
- 38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한 결과 화재의 예방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소화기구, 소방용수시설 또는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 )
- 39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7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
- 40 소방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현황, 화재안전조사의 결과, 소방설비등의 설치 명령 현황, 소방교육의 현황 등이 포함된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예방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
- 41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설비등의 설치를 명하는 경우 해당 관계인에게 소방설비등의 설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 42 소방관서장은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특보에 따라 화재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분석·판단되는 경우에는 화재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보도기관을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이를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 )
- 43 소방청장은 화재발생 원인 및 연소과정을 조사·분석하는 등의 과정에서 법령이나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
- 44 소방청장은 화재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 45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화재안전과 관련되는 법령이나 정책을 담당하는 관계 기관의 소속 직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소방기술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로 한다. ( )
- 46 소방관서장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안전취약자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답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학습 목표

소방시설법 제3장이 소방시설과 관련된 물(物)적인 사항인 특정소방대상물과 그에 대한 소방시설 등이 중점적인 규율사항이었다면, 화재예방법의 이 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인(人)적인 요소를 중점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특정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인에게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제1절 소방안전관리

### 1 소방안전관리제도의 의의

#### (1) 의의

- 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화재로부터의 자기재산과 생명의 보호는 일차적으로 관계인의 책임에 그 근간을 두고 있다. 하지만 화재예방이라는 소방의 목적은 공공의 복리증진이라는 공공재의 성격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 소방업무의 특징<sup>16)</sup>이라 할 수 있다.
- ② **화재예방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의 의무를 부여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 (2) 소방안전관리제도와 자기책임

- ① 관계인은 자신의 건물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므로 재난을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고, 화재의 특성상 초기 대응능력이 요구되므로 민간자율 소방안전관리 업무는 중요하다.
- ② 민간자율 소방안전관리업무의 특징
  - ㉠ 화재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인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인 피해가 유발될 수 있다는 점
  - ㉡ 민간의 화재예방에 대한 투자가 소극적이어서 화재 예방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 ㉢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의 안전이라는 것은 헌법상 요구되고 있는 국가의 의무이며,
  - ㉣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는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요구한다는 속성이 있으며
  - ㉤ 민간의 소방역량을 강화하고, 업무의 폭증으로 인한 소방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sup>16)</sup> 화재의 예방이라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리의 한계를 넘어서 고도의 전문성과 복잡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업무의 속성상 민간자율에 의함은 전문성 부족 및 화재예방에 대한 관심부족 등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 7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1) 의의

- ① 하나의 소방대상물은 전체적으로 통일된 소방안전관리 업무가 수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리권원 또는 소유권이 여러 사람에게 분리되어 있는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효율적인 소방안전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워진다.
- ② 따라서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 중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 총괄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2)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 \* 20년 소방교, 18년 소방장, 17년 인천 소방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그 관리의 권원별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리의 권원이 많아 효율적인 소방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의 권원을 조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할 수 있다.(법 제35조 제1항)

- ① 복합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② 지하(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 ③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전통시장을 말한다.(영 제35조)

#### 실전연습

Q. 다음 중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닌 것은?

- 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복합건축물
- ② 지하상가
- ③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전통시장
- ④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해설 |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이 공동 소방안전관리 선임대상이다.

→ ④

### (3) 총괄소방안전관리자 등(법 제35조 제2항 내지 제4항)

- ①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관리의 권원별 관계인은 상호 협의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걸쳐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는 소방안전관리자(총괄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 ⑭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⑮ 화재발생 시 화재경보,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 등 초기대응에 관한 사항
- 4)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 ① 대행할 수 있는 업무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관리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방화시설의 관리 또는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 1급 또는 2급 : 스프링클러, 물분무소화 또는 제연설비는 중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는 초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기술인력이 필요함
  - ② 대행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1급 대상물(연면적 1만 5천제곱미터 이상과 아파트는 제외) 또는 2급·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5) 관계인의 의무 등
  - ① 관계인의 지도·감독 등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② 조치요구 :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③ 불이익 처우 금지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조치요구 등을 이유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명령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⑤ 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작성·관리해야 한다.
  - ⑥ 소방안전관리업무 이행명령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업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 1)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①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1명 이상 특급 관리자) :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는 제외
    - ㉠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 ㉡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아파트 제외)
    - ㉢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 ②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1명 이상 1급 관리자) :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는 제외
    - ㉠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 ㉡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 ㉢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 ㉣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 ③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1명 이상 2급 관리자) : 다음에 해당하는 것(특급·1급 제외)
    - ㉠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물분부등 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 제외]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 ㉢ 지하구
    -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한정) :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 난방의 공동주택





- 36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교육의 시간은 80시간, 1급 소방안전관리자와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는 강습교육의 시간은 40시간이다. ( )
- 37 소방청장은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무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일시·장소, 그 밖에 실무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
- 38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 이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
- 39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위소방대를 화재 발생 시 비상연락,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와 화재 발생 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편성·운영해야 한다. ( )
- 40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자위소방대를 소집하여 편성 상태 및 초기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소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
- 4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 또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 42 피난계획에는 화재경보의 수단 및 방식과 층별, 구역별 피난대상 인원의 현황, 이동이 어려운 사람(재해약자)의 현황, 각 거실에서 옥외(옥상 또는 피난안전구역을 포함)로 이르는 피난경로, 재해약자 및 재해약자를 동반한 사람의 피난동선과 피난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43 피난유도 안내정보 제공은 연 1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방법,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제공한다. ( )
- 4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 등(근무자등)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 )
- 45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1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 )
- 46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소방훈련과 교육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
- 47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했을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 )

답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 33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을 하는 경우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 ②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신고하여야 한다.
- ③ 건설현장의 소방계획서의 작성,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 ④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하여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관계인의 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시공자”로 본다.

**해설** ① 틀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공자가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의 우려가 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제34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까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34 다음 중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 합계와 관련하여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연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인 특정소방대상물
- ②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인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인 특정소방대상물
- ③ 연면적의 합계가 7천제곱미터인 지상층의 층수가 10층인 특정소방대상물
- ④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인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

**해설** ③ 틀림, 이 경우 층수가 11층인 경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 합계 1만5천제곱미터 이상  
 ㉡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인 것,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

### 35 다음 중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 ① 소방청장
- ② 시·도지사
- ③ 소방서장
-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해설** ④ 맞음,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제24조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

**정답** 33. ① 34. ③ 35. ④

### 39 다음 중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총괄소방안전관리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총괄소방안전관리자등은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의 소방계획 수립 및 시행과 소방훈련·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의 공동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수행한다.
-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화재 예방,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편성, 소방시설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 ④ 공공기관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책임 및 선임과 소방안전관리의 업무대행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해설** ① 틀림,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걸쳐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는 소방안전관리자(총괄소방안전관리자)는 별표 4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별 선임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 경우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영 제36조)

### 40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의 적용대상으로 틀린 것은?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② 학교(국공립학교만 해당)
- ③ 공공기관
- ④ 지방공사

**해설** ② 틀림, 국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도 그 적용대상이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의 적용대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는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사립학교가 포함된다.

### 41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종합정보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종합정보망을 구축할 수 있다.
- ② 종합정보망은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선임신고 및 해임 사실의 확인 현황과 소방안전관리자 등 자격증의 정지·취소 처분 현황, 교육 실시현황 정보를 관리한다.
- ③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④ 종합정보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종합정보망과 유관 정보시스템의 연계·운영과 정보를 저장·가공 및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운영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해설** ② 맞음, 종합정보망은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선임신고 및 해임 사실의 확인 현황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현황, 자격시험 합격자 및 자격증의 발급 현황,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정지·취소 처분 현황, 교육 실시현황 등의 정보를 관리한다.(법 제33조 제1항)

③ 틀림,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39. ① 40. ② 41. ③



화재예방  
안전진단

## 1) 대상

- ① 안전진단 의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 ② 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 ㉠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 ㉡ 항만시설(여객이용·지원시설), 철도시설(역 시설), 도시철도시설(역사 및 역 시설)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 ㉢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중 공동구
  - ㉣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중 가스시설
  - ㉤ 가스공급시설 중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30톤 이상인 가연성 가스 탱크가 있는 가스공급시설
  - ㉥ 발전소 중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발전소
- ③ 소방훈련과 교육 및 자체점검의 의제 :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연도에는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 및 「소방시설법」 제22조에 따른 자체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 2) 안전진단의 범위 등

- ① 화재위험요인의 조사에 관한 사항
- ② 소방계획 및 피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③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④ 비상대응조직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⑤ 화재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⑥ 그 밖에 화재예방진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화재 등의 재난 발생 후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 ㉡ 지진 등 외부 환경 위험요인 등에 대한 예방·대비·대응에 관한 사항
  - ㉢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 등 개선요구 사항 등에 대한 이행 여부

## 3) 안전진단의 실시

- ① 최초 안전진단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건축되어 안전진단의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사용승인 또는 완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에 최초의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 ② 안전진단의 시기 : 안전진단을 받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안전등급에 따라 정기적으로 다음의 기간에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 ㉠ 안전등급이 우수 : 안전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6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 ㉡ 양호·보통인 경우 : 안전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 ㉢ 미흡·불량인 경우 : 안전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4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 4) 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

- ① 신청 :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 ② 절차 : 안전진단 신청을 받은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은 위험요인 조사, 위험성 평가,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의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 ③ 안전진단의 방법
  - ㉠ 자료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및 점검
  - ㉡ 정성적·정량적 방법을 통한 화재위험성 평가, 불시·무각본 훈련에 의한 비상대응 훈련 평가, 지진 등 외부 환경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대비·대응태세 평가
- ④ 안전진단의 세부 절차 :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11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취소의 처분이나 화재예방진단기관의 지정 취소의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
- 12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내야 한다. ( )
- 13 수수료 및 교육비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납부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시험시행일 또는 교육실시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
- 14 화재예방법에 따른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 15 소방청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법 제3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업무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한다. ( )
- 16 소방관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의 접수와 해임 사실의 확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강습교육 및 실무교육 업무를 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다. ( )
- 17 소방관서장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 )
- 18 화재안전조사단의 구성원이나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원의 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수뢰 관련, 제3자 뇌물제공)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
- 19 안전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에서 사무실은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강의실은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이고 책상·의자, 음향시설, 컴퓨터 등 교육에 필요한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 )
- 20 소방관서장 또는 시·도지사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
- 21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22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나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23 화재예방진단기관으로부터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화재안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및 화재예방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자는 모두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답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06

## 적중예상문제

0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소방관서장이 추진하는 시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 및 홍보
- ②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 ③ 화재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 ④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의 설치·운영

해설 ④ 틀림,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소방청장이다. 소방관서장은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다음의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 및 홍보
- ㉡ 소방대상물 특성별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동요령의 개발·보급
- ㉢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 ㉣ 화재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 ㉤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 취약계층에 대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
- ㉥ 그 밖에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02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소방대상물 특성별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동요령의 개발·보급과 그 밖에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소방관서장은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 활동에 국민 또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③ 소방관서장은 국민이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추진하는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해설 ③ 틀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소방청장이다.(법 제43조 제3항)

- ①, ②, ④ 맞음, 법 제43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규정이다.

정답 01. ④ 02. ③





### 06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에서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것은?

- ㉠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정지
- ㉡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취소
- ㉢ 화재예방진단기관의 업무 정지
- ㉣ 화재예방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해설** ② 맞음.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정지 및 화재예방진단기관의 업무 정지는 청문의 대상이 아니다.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법 제46조)  
 ㉠ 제3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취소  
 ㉡ 제42조제2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 07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강습교육 수강신청 시 교육비를 납부해야 한다.
- ② 시험시행일 또는 교육실시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 ③ 화재안전조사단의 구성원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원의 담당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④ 소방관서장(권한 또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 또는 시·도지사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해설** ② 틀림. 시험시행일 또는 교육실시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100분의 50을 반환해야 한다. 시험시행일 또는 교육실시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규칙 제49조 제2항)

### 08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안전원에 위탁하는 업무가 아닌 것은?

- ① 소방안전관리 등에 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업무
- ②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및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업무
- ③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업무
- ④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의 접수 확인 업무

**해설** ③ 틀림. 소방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업무를 소방서장에게 위임한다.(영 제48조) 소방관서장은 ①, ②, ④ 및 다음의 업무를 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다.(영 제48조)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해임 사실의 확인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의 접수  
 ㉢ 제34조에 따른 강습교육 및 실무교육

정답 06. ② 07. ② 08. ③

## 21 화재예방법령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은?

- ①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 ②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 ③ 기간 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④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및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자

해설 - ① 틀림,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③, ④ 맞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은 ①, ②, ③ 및 다음과 같다.  
 ㉠ 소방설비등의 설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2 「화재예방법령」 상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② ①의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③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 ④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해설 - ①, ② 맞음, 영 제51조 관련 별표 9, 1호 가목 및 나목 규정이다.  
 ③ 틀림,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 23 다음 중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50만원
- ②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100만원
- ③ 지연신고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0만원
- ④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2차 위반 : 200만원

해설 - ①, ②, ③ 맞음,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에서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50만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100만원, 3개월 이상이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이다.  
 ④ 틀림,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이다.

정답 21. ① 22. ③ 23. ④



## 24 다음 화재예방법령상 과태료 부과에 개별기준이 다른 하나는?

- ①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 ②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③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경우
- ④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해설** ③ 맞음,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부과의 개별기준은 위반회수와 관계없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①, ②, ④의 경우에는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5 다음 중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없는 사람은?

- ① 시·도지사
- ② 소방청장
- ③ 소방본부장
- ④ 행정안전부장관

**해설** ② 법 제5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법 제52조 제4항) 법 제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영51조)

## 26 다음은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양벌규정에 대한 내용이다. 양벌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면? ★ 19년 소방장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 ①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지도·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 ②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③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④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

**해설** ④ 맞음,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①, ②, ③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므로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24. ③ 25. ④ 26. ④

## 27 화재예방법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7년 소방교 수정

- ① 화재안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②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③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④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해설** ② 틀림,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①, ③, ④ 맞음, 화재안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8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의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9년 소방교

- ①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해설** ④ 틀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29 다화재안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벌칙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에 벌칙을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 21년 소방교, 소방장

- ① 300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② 300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벌금
- ③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④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② 맞음,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와 법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총괄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50조 제3항)

**정답** 27. ② 28. ④ 29. ②

-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청장은 제정안 또는 개정안이 화재안전기준 중 성능기준 등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승인을 통보받은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승인받은 기술기준을 관보에 게재하고, 국립소방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기준의 제정·개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소방연구원장이 정한다.

###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시설등의 설치·관리와 소방용품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소방 기술·기준의 개발 및 조사·연구, 전문인력 양성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 【관계인의 의무】

- ① 관계인(「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을 보전·향상시키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관계인은 매년 소방시설등의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관계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④ 관계인 중 점유자는 소유자 및 관리자의 소방시설등 관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⑤~⑧ 삭제

###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와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영 제3조 【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화재발생 현황
2. 소방대상물의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 추세 등 화재예방정책의 여건 변화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의 설치·관리 및 화재안전기준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계절별·시기별·소방대상물별 화재예방대책의 추진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영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① 소방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영 제5조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① 소방청장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각각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③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세부 집행계획
  2. 직전 세부시행계획의 시행 결과
  3. 그 밖에 화재안전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 ①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소방대상물의 용도별·규모별 현황
  2. 소방대상물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현황
  3.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 설치·관리 현황
  4.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소방청장은 소방대상물의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보유·운용하고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



**제23조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 ① 소방관서장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이하 “화재안전취약자”라 한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의 대상·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소방관서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이 원활히 수행되는 데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영 제24조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대상 및 방법 등】**

-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이하 “화재안전취약자”라 한다)에 대한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2.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4.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6. 그 밖에 화재안전에 취약하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 ② 소방관서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개선
  - 2. 소방시설등의 안전점검
  - 3. 소방용품의 제공
  - 4. 전기·가스 등 화재위험 설비의 점검 및 개선
  - 5. 그 밖에 화재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9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1) 영 제15조 삭제**



## (2) 규칙 제6조 삭제

## (1) 규칙 제7조 삭제

## 제5장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제24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①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대하여 보조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② 다른 안전관리자(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가스·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관리업자”라 한다)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4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